

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기간제근로자(전문연구원) 면접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(전문연구원) 면접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11일
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

1 면접전형 합격자 명단

구 분	응시번호 및 성명
전문연구원	(대기환경-1)여*승, (대기환경-4)최*혁

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가. 등록대상 : 면접합격자

나. 등록일시 : 2025.4.16.(수) 18:00까지

다. 등록장소 :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

※ 위치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206, 백천빌딩 5층

라. 등록방법 :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(방문 또는 등기우편)

마. 구비서류

- ① 신원진술서 1부. [붙임 서식 1]
- ② 기본증명서(상세) 1부.
-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.
-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.

- ⑤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⑥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. [붙임 서식 2]
-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 [붙임 서식 3]
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,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.
 - ☞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일부-성년후견, 한정후견) 1부
 - * 전자후견등기시스템(egdrs.scourt.go.kr)에서 발급(무료, 주민번호 공개)
 - ☞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
 - * 크레딧포유(credit4u.or.kr) 회원가입 후 발급 가능(무료)

3 기 타

- 면접합격자가 등록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채용 관련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채용후보자등록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[붙임 서식 4]의 채용포기서를 작성하여 2025.4.16.(수) 18:00까지 전자우편(sun5144@korea.kr)으로 보내주시고,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그 외 채용후보자등록 등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(☎043-279-452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신원진술서(약식) 서식 1부.
2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.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서식) 1부.
4. 채용포기서(서식) 1부. 끝.

[서식 1]

신 원 진 술 서(약식)

(앞쪽)

성 명		한 자		주민등록번호		【 사 진 】 사진파일 가능 (3cm×4cm) · (3.5cm×4.5cm)
등록기준지						
주 소						
실거주지						
직 장	직장명 : 소재지 :			연 락 처	직장전화 : 휴 대 폰 : E-mail :	
학 력	학 교 명	기 간		전 공 학 과	학 위	소 재 지
		. . ~ . .				
		. . ~ . .				
경 력	기 관 · 업 체 및 정 당 · 사 회 단 체 명	기 간		직 책 (직 급)	상 별 관 계 (일자)	
		. . ~ . .				
		. . ~ . .				
해 외 거 주 사 실	거 주 국 가	기 간		거 주 목 적	동 반 가 족	
		. . ~ . .				
병 역	군 별	기 간		병 과	최 종 계 급	미 필 사 유
		. . ~ . .				
배 우 자 부 모 자 녀	관 계	성 명	생 년 월 일	관 계	성 명	생 년 월 일
	배 우 자			子 女		
	父			子 女		
	母			子 女		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						
작 성 자 성 명				년 월 일 인(서명 또는 날인)		

210mm×297mm [백상지(80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(기간제 포함) 작성용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 있음 없음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

※ **부패행위**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
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----- 해당 해당
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----- 해당 해당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년 월 일
지 원 자

(서명)

